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관 등 38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신항 건설 등 항만 여건 변화로 인한 검역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10. ~ 3.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역학조사관”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 정보 분석 기획 및 총괄 조정
8. 감염병 위기 대비 예비방역인력 및 협업인력 교육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제4항제1호 중 “위험평가”를 “위기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6. 감염병 위험평가·분석 및 관련 연구·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외 감염병 위기분석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현장 역학조사”를 “역학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위원회 구성 및”을 “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관부처”를 “유관기관과의”로 한다.

1.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2. 질병대응센터,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및 기술지도 지원
4. 역학조사 정보 분석·관리 및 기준 설정
5.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발간

제5조제6항제2호 중 “분석”을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효과분석”을 “효과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향분석”을 “영향 연구”로 한다.

제6조제6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및 감염병포털 구축·운영
17. 검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감시 및 역학조사 연보”를 “감시연보”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을 “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병등”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제9조제6항제1호 중 “수립 및 조정”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결핵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결핵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석
5. 결핵에 관한 감시·관리·역학조사·연구 총괄
6. 결핵 진단시약 및 치료제의 관리·지원
7.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9. 결핵 역학조사·접촉자 검진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10. 질병대응센터의 결핵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11.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결핵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제9조제7항제1호 중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다)의 감시 및 관련 통계 관리”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감시·관
리·역학조사·연구 및 통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
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
11.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관리

제10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희귀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희귀질환관리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희귀질환 지정 및 관리
3.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4. 희귀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
5.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6.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7.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실태조사
8.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
9. 희귀질환에 관한 홍보 및 국내외 협력
10. 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제13조제9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연구

제13조제1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

제17조제6항제4호 중 “미세먼지·흡연”을 “미세먼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계 “480”을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79”를 “480”으로 하

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6”을 “57”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82”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48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6”을 “57”로 한다.

별표 10 제1호1)부터 1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3월 31일”을 각각 “2024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2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3월 31일”을 각각 “2024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23조제5항 관련)

명칭	검역항	검역구역	
		수역	육역
국립인천 공항검역 소	인천국제공항		북위 37도27분, 동경 126도 26분의 지점(공항표준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김포국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 48분의 지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 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북출입사무소		북위 37도55분, 동경 126도 42분의 지점으로부터 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부산 검역소	부산항	북위 35도04분48.3초, 동경 129도01분39.5초의 지점(부민동 남단)으로부터 북위 35도04분53초, 동경 129도 02분23초의 지점(절영도 태봉포)을 연결한 선 및 북위 35도05분25초, 동경 129도 04분18.5초의 지점(광성목)으로부터 북위 35도05분46초, 동경 129도05분47초의 지점(신선대 컨테이너 부두 끝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감천항		북위 35도02분42초, 동경 129도00분01초의 지점(감천항 서방과제)으로부터 북위 35도02분57초, 동경 129도00분54초의 지점(감천항 동방과제)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다대포항		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128도59분06초의 지점(다대포항 서방과제)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25초, 동경 128도59분12초의 지점(다대포부두의 동쪽 끝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수영만		북위 35도09분27초, 동경 129도08분23초의 지점(수영만 요트계류장의 북쪽)으로부터 북위 35도09분15초, 동경 129도08분32초의 지점(수영만 요트계류장의 남쪽)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부산신항		북위 35도04분39.4초, 동경 128도49분56.7초의 지점(신항1부두 동쪽 끝)으로부터 북위 35도04분16.7초, 동경 128도49분56.6초의 지점(신항4부두 동쪽 끝)과 북위 35도04분39.0초, 동경 128도47분04.8초의 지점(신항3부두 서쪽 끝)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53.3초, 동경 128도47분37.4초의 지점(가덕도 서쪽 끝 매립지까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에서 북컨테이너부두 지역 700미터, 남컨테이너부두지역 560미터, 다목적부두지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인천	인천항	북항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검역소			가. 북위 37도31분2.99초, 동경 126도 35분50.28초 나. 북위 37도29분29.75, 동경 126도35분50.63 다. 북위 37도29분32.64, 동경 126도37분41.16 라. 북위 37도29분44.51, 동경 126도38분26.87	이내의 육지지역
		내항	북위 37도28분1.91초, 동경 126도36분52.55초의 지점으로부터 반경 1.5천미터 갑문 안쪽으로의 해면	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항	북위 37도27분54.72초, 동경 126도35분11.76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25분8.39초, 동경 126.35분11.03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신항	북위 37도20분12.47초, 동경 126도34분53.36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20분13.55초, 동경 126도38분46.32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영흥도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가. 북위 37도14분42.66, 동경 126도25분39.68 나. 북위 37도13분42.66, 동경 126도25분39.68 다. 북위 37도13분42.66, 동경 126도26분39.68	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경인항		북위 37도33분41.3초, 동경 126도35분40.3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33분26.9초, 동경 126도36분13.1초의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국 립 평 택 검역소	평택·당진항	북위 37도01분02초, 동경 126도47분10.78초의 지점으로부터 반경 2천미터 원호 내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대산항	북위 36도59분, 동경 126도20분의 지점(황금도)으로부터 북위 36도59분59초, 동경 126도26분18초의 지점(화곡리)과 북위 37도03분59초, 동경 126도24분48초(철도) 및 북위 37도, 동경 126도19분12초의 지점(가인서)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태안항	북위 36도52분48초·동경 126도11분06초의 지점(정곡두 해안선)으로부터 북위 36도54분30초·동경 126도15분24초 지점(민어도)과 북위 36도55분30초·동경 126도15분12초 및 북위 36도54분06초·동경 126도10분0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청주국제공항		북위 36도43분, 동경 127도30분의 지점으로부터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군 산 검역소	군산항 장항항	북위 35도59분04초, 동경 126도44분41초의 지점(구포34미터산정)으로부터 북위 35도59분50초, 동경 126도43분45초의 지점(고치곶) 및 북위 36도00분17초, 동경 126도40분08초의 지점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군산시 및 장항읍의 해안선 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전망산정)으로부터 북위 35도58분25초, 동경126도31분33초의 지점(7부두 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보령항	북위 36도25분21초, 동경 126도59분57초의 지점(소해)으로부터 북위 36도22분56초, 동경 126도29분12초의 지점(송도산정) 및 북위 36도24분06초, 동경 126도28분14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울산검역소	울산항	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의 지점, 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9도28분의 지점, 북위 35도24분, 동경 129도28분의 지점, 북위 35도21분24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가남말 최동단 북위 35도30분48초, 동경129도26분5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천미터 원호안의 해면	북위 35도25분45초, 동경 129도22분16초의 지점에서 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 지점까지 연결한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과 내미포 최동단 북위 35도31분53초, 동경 129도27분20초 지점과 일산리 최동단 북위 35도29분55초, 동경 129도26분38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포항검역소	포항항	북위 36도06분48초, 동경 129도25분37초의 지점(달만갑)으로부터 북위 35도59분50초, 동경 129도27분31초의 지점(일월동북방)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대구국제공항		북위 35도53분38초, 동경 128도39분32초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

			내의 육지지역
국립동해검역소	동해·묵호항	1. 동해시 냉천동단에서 북위 37도31분, 동경 129도10분30초와 북위 37도28분44초, 동경 129도10분30초 및 동해항 남쪽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어달동오도 동방 북위 37도33분12초, 동경 129도07분25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32분, 동경 129도07분02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북위 37도45분02.89초, 동경 128도58분18.35초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46분14.9초, 동경 129도00분07.15초 지점과 북위 37도45분12.94초, 동경 129도01분38.99초 지점, 북위 37도44분01.21초, 동경 129도00분22.21초 지점, 북위 37도44분15.71초, 동경 128도59분18.3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호산항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12분41.87초, 동경 129도20분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12분41.87초, 동경 129도22분36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37도08분42초, 동경 129도21분52.2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9도23분55.2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삼척항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에서 북위 37도25분40초, 동경 129도12분15초의 지점, 북위 37도26분05초, 동경 129도12분15초의 지점 및 북방과제 북쪽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옥계항	주수천 하구의 북방과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천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37도38분, 동경 129도05분30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37도36분48초, 동경 129도05분30초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속초항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12분38초, 동경 128도36분09초)에서 조도 동단을 거쳐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11분25초5, 동경 128도36분15초5를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양양국제공항			북위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동해선도로남북 출입사무소		북위 38도33분58초, 동경 128도23분35초에 위치한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동해선철도남북 출입사무소		북위 38도33분55초, 동경 128도23분28초에 위치한 동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국 립 목 포 검역소	목포항	북위 34도41분19.9초, 동경 126도22분34.1초의 지점(금호선착장)으로부터 북위 34도48분11.7초, 동경 126도26분23.1초의 지점(부흥산정)과 북위 34도49분48.5초, 동경 126도22분55.8초의 지점(삽진선착장) 및 북위 34도45분43.7초, 동경 126도17분55.2초의 지점(목포구등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완도항	신지도 상산산정과 동망봉산정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에서 가미구미 동측돌단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무안국제공항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국 립 여 수 검역소	여수항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43분51초, 동경 127도43분58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43분52초, 동경 127도45분22초,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1천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이내의 육지지역
	광양항	북위 34도49분15초, 동경 127도46분20초의 지점에서 북위 34도50분53.20초, 동경 127도48분22.26초 지점, 북위 34도51분29.19초, 동경 127도48분18.26초 지점, 북위 34도52분11.19초, 동경 127도48분36.26초 지점, 북위 34도54분50.61초, 동경 127도48분48.73초 지점, 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7도 47분54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56분06초, 동경 127도46분56초 지점)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56분42.16초, 동경 127도45분57.2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태인 연륙교(북위 34도56분01.16초, 동경 127도44분49.28초 지점 및 북위 34도55분54.16초, 동경 127도44분49.28초 지점), 광양만 철교(북위 34도 55분44.1초, 동경 127도41분58.8초 지점 및 북위 34도55분41.9초, 동경 127도42분15.1초 지점), 북위 34도55분21.16초, 동경 127도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마산 검역소		36분37.32초 지점과 북위 34도55분35.16초, 동경 127도35분55.33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하동항 (하동화력발전소부두)	북위 34도56분27초, 동경 127도49분4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1천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마산항	북위 35도09분선 이내의 마산만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및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의 육지지역
	진해항	진해시 행암동 동단 북위 35도06분39초, 동경 128도41분39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천500미터 원호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통영항	북위 34도49분47초, 동경 128도24분27초의 지점(당동남쪽 튀어나온 곳)으로부터 북위 34도49분43초, 동경 128도24분27초의 지점(당산리 돌단)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0분31초, 동경 128도27분01초의 지점(매일봉)과 북위 34도49분23초, 동경 128도26분37초의 지점(진송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삼천포항	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8도05분21초의 지점(장사발 남단)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21초, 동경 128도05분0.25초의 지점(추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4분28초, 동경 128도04분40초의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지점(신수도 북단 금주갑)을 연결한 선과 동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17.5초, 동경 128도03분56초의 지점(장구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5분32초, 동경 128도03분27초의 지점(사천시 대방동 남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옥포항	북위 34도53분18초, 동경 128도44분06초 지점 말단으로부터 북위 34도53분57초, 동경 128도43분07초의 말단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장승포항	북위 34도51분37초, 동경 128도44분16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0분58초, 동경 128도43분59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고현항	북위 34도54분39초, 동경 128도35분08초의 지점(다갈암)으로부터 북위 34도55분18초, 동경 128도36분25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김해공항검역소	김해국제공항		북위 35도11분, 동경 128도56분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제주검역소	제주항	북위 33도31분08.04초, 동경 126도30분05.01초의 지점(제주항 어항구 서방파제 등대)으로부터 북위 33도31분16.0초, 동경 126도31분49.9초의 지점(제주항 어항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구 동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58.63초, 동경 126도32분28.26초의 지점(제주항 제1서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45.8초, 동경 126도32분29.7초의 지점(제주항 제1동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58.5초, 동경 126도33분29.04초의 지점(제주항 제2서방파제 등대)과 화북1동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서귀포항	북위 33도13분54.68초, 동경 126도33분55.63초의 지점(서방파제 끝)과 북위 33도13분46.84초, 동경 126도34분09.80초의 지점(동방파제 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북위 33도13분33초, 동경 126도29분26초의 지점(동방파제 등대)과 북위 33도13분20초, 동경 126도29분42초(남방파제 등대)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제주국제공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기대응분석관) ① · ② (생 략) ③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기대응분 석관을 보좌한다. <u><신 설></u> 1. <u>역학조사관</u>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2. ~ 6.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④ 위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보 좌한다. 1. 감염병 <u>위험평가</u> 계획 수립 2. · 3. (생 략) 4. <u>국외감염병 여행자 건강 경</u> <u>보체계 구축</u> 5. <u>감염병 재난 위기징후 감시</u> <u>및 평가</u>	제5조(위기대응분석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감염병 정보 분석 기획 및 총</u> <u>괄 조정</u> 2. <u>역학조사관 및 방역관</u> ----- -----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8. <u>감염병 위기 대비 예비방역</u> <u>인력 및 협업인력 교육</u> 9. <u>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u> <u>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④ ----- ----- -----. 1. ----- <u>위기분석</u> ----- 2. · 3. (현행과 같음) 4. <u>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u> <u>체계 구축</u> <u><삭 제></u>

6. <u>감염병 위험평가 및 분석</u> 7. (생 략) 8. <u>감염병 위험평가·분석을 위한 연구</u> 9. <u>감염병 위험평가 관련 현장 역학조사 지원</u> 10. <u>국외 감염병 위험평가·분석 협의체 구축</u> 11. <u>국내 감염병 위험평가·분석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⑤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보좌한다. 1. <u>중앙역학조사반 설치·운영 및 현장 역학조사 지원</u> 2. <u>지방자치단체 및 질병대응센터의 역학조사 지원</u> 3. <u>현장 역학조사 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u> 4. <u>역학조사 질 관리</u>	6. <u>감염병 위험평가·분석 및 관련 연구·지원·협력에 관한 사항</u>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2. <u>국외 감염병 위기분석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u> ⑤ ----- ----- -----. 1. <u>중앙역학조사반 운영</u> 2. <u>질병대응센터,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및 기술지도 지원</u> 3. <u>역학조사</u> ----- ----- 4. <u>역학조사 정보 분석·관리 및 기준 설정</u>
---	--

5.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관련 매뉴얼 수립	5.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발간
6. 역학조사 <u>전문위원회</u> 구성 및 운영	6. ----- <u>전문위원회</u> ----- -----
7. 역학조사 관련 <u>유관부처</u> 업 무 연계 및 조정	7. ----- <u>유관기관과의</u> -----
⑥ 위기대응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기대응분석관 을 보좌한다.	⑥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의 수리(數理)적 <u>분석</u> 및 모델링	2. ----- <u>연구</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감염병 유행 특성별 영향분 석 및 평가	<삭 제>
5. 감염병 유행 대응수단 중재 <u>효과분석</u>	5. ----- <u>효과 연구</u>
6. 감염병 위험요인 및 <u>영향분</u> <u>석</u>	6. ----- <u>영향 연</u> <u>구</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관) ① ~ ⑤ (생 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 다.	⑥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② (생략)

③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및 감염병포털 구축·운영

6. ~ 8. (생략)

9.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연보 발간

10.·11. (생략)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水因性)·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 6. (생략)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병등에

16.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및 감염병포털 구축·운영

17. 검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9. ----- 감시연보 -----

10.·11. (현행과 같음)

④ -----
-----.

1. -----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바이러스성 간염-----

2. ~ 6. (현행과 같음)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

관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신 설>

⑤ (생 략)

⑥ 결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결핵예방관리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 략)

3. 결핵 감시 및 결핵 관련 통계
관리

4. 결핵 진단시약 및 치료제의
관리·지원

5. 결핵예방 및 관리 관련 조사
·연구

6. 결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결핵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8. 질병대응센터의 결핵 역학조
 사 및 환자 관리 등에 대한 기
술지도 및 평가

9. 결핵 및 잠복결핵의 조기발
견·치료 및 관리 지원

10.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 수립·시행

2. (현행과 같음)

3. 결핵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
영

4. 결핵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
석

5. 결핵에 관한 감시·관리·역
학조사·연구 총괄

6. 결핵 진단시약 및 치료제의
관리·지원

7.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9. 결핵 역학조사·접촉자 검진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10. 질병대응센터의 결핵 역학
 조사 및 환자 관리 등에 대한

11. 결핵 예방 및 홍보 · 교육

12. 결핵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 14. (생략)

⑦ 에이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성매개감염병 ·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증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한센병(이하 “성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의 감시 및 관련 통계 관리

4 · 5. (생략)

6. 성매개감염병등 관련 조사 및 연구

7. · 8. (생략)

9. 성매개감염병등 관련 국제협력

10. 성매개감염병등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기술지도 및 평가

11.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결핵예방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국제협력

13. · 14. (현행과 같음)

⑦ -----
-----.

1. ----- 관련 -----

2. (현행과 같음)

3. -----

-----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4 · 5. (현행과 같음)

6. ----- 감시 · 관리
· 역학조사 · 연구 및 통계관리

7. · 8. (현행과 같음)

9. 성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국제 협력

<삭 제>

<신 설>

11. (생 략)

제10조(감염병위기대응국) ① ~

③ (생 략)

④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스마트 검역체계 구축·운영
및 검역정보시스템 관리

8. ~ 11. (생 략)

⑤ ~ ⑦ (생 략)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 ⑤
(생 략)

⑥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8. (생 략)

⑦ 희귀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희귀질환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

11.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의
료기관 관리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0조(감염병위기대응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11.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⑦ 희귀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희귀질환관리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희귀질환 지정 및 관리

2. <u>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u> 3. <u>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u> 4. <u>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진단 및 치료 지원</u> 5. <u>희귀질환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u> 6. <u>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u> 7. <u>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리</u> ⑧ (생략) ⑨ 건강위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⑩ (생략) ⑪ 미래질병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3. <u>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등 구성·운영</u> 4. <u>희귀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u> 5. <u>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u> 6. <u>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u> 7. <u>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실태조사</u> 8. <u>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u> 9. <u>희귀질환에 관한 홍보 및 국내외 협력</u> 10. <u>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u>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8. (현행과 같음) 9. <u>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연구</u>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7. (현행과 같음) 8. <u>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u>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	--

~ ⑤ (생 략) ⑥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미세먼지·흡연</u> 관련 만성질 환의 예방·중재 및 관리 연 구 ⑦·⑧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u>미세먼지</u> ----- ----- -- ⑦·⑧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0</u>	<u>481</u>	+1
·	·	·	
·	·	·	
일반직 계	<u>479</u>	<u>480</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			
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	<u>56</u>	<u>57</u>	+1
구관			
·	·	·	
·	·	·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2</u>	<u>483</u>	+1
·	·	·	
·	·	·	
일반직 계	<u>481</u>	<u>482</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56</u>	<u>57</u>	+1
·	·	·	
·	·	·	